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6. 7.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6월 21일, 한정애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4년 6월 2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7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4. 8. 20.)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2026. 3. 12.)

상정, 축조심사

제434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2026. 4. 28.)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34회국회(임시회 · 폐회중) 제1차 전체회의(2026. 4. 29.)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한정애의원)

기후변화에 따른 위기상황에 대응하고자 국제사회는 2050년까지 완전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로 하였으며, 금융기관도 이에 적극 동참해

야할 것임.

금융기관의 경우 그 업무 특성상 연료 사용에 따른 직접적인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투자 또는 대출 등에 따라 그 거래 상대방에게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이른바 ‘금융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탄소중립 대응의 핵심임.

실제 미국 최대 공적 연기금인 캘퍼스(calPERS)를 비롯하여 우리나라의 신한금융그룹, KB금융그룹 등의 금융기관들이 금융배출량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화석연료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을 낮추는 방식 등으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 최대 공적 연기금인 국민연금의 경우 아직까지 금융배출량 감축 등과 같은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음.

이에 국민연금기금 운용에 있어 금융배출량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이행실적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전세계적 흐름인 기후위기 대응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현행법 제102조제4항은 국민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관리·운용할 때 ESG를 고려할 수 있다는 재량규정인데, 개정안은 이를 강행규정으로 하여 ESG 투자를 의무화하려는 것임.

그런데, 보험료율을 인상한 최근의 모수 조정에도 불구하고 기금 재

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점과 현행법에서 ESG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한 목적은 제102조제4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보건복지부장관이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일부 투자방법에 대하여 ESG를 의무적으로 고려하게 하는 것이 국민연금 급여 지출을 위한 책임준비금인 기금 운용의 수익성을 높이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데 미칠 영향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됨.

한편 개정안은 금융배출량(financed emissions) 개념을 차용한 기금 운용배출량 관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민연금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구체화된 탄소중립을 지향하며 미래세대의 환경권을 보장하여야 할 국가의 책무를 고려한 조치인 것으로 생각됨.

다만, 기금운용배출량 관리제도가 법제화될 경우 미래의 금융 환경이 불확실한 가운데 기금운용수익률을 제고하는 데 필요한 투자전략 수립의 유연성이 제약되는 측면이 있고, 투자대상의 온실가스 배출량 중 어느 범위까지를 기금운용배출량에 포함할 것인지를 비롯한 제도적 기반이 전반적으로 완비되지 못한 상황인 점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이수진)

- 국민연금기금의 재정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전 국민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은 수익의 최대 증대를 최우선 가치로 고려하며 관리·운용되어야 하므로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의 ESG 투자를 의무화하는 강행규정으로의 개정은 신중할 필요가 있음.
- ESG 투자와 기금투자수익률이 반드시 상충하는 것은 아니고, 국민연금기금 관리·운용 시 ESG를 고려함으로써 수익성에 미칠 장래의 불확실한 위험을 완화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ESG 투자의 원칙이 법률에 규정될 필요가 있음.
-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외의 자산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융자’의 방법으로 국민연금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경우에도 ESG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각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마련하기로 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